

## 조도면 주민자치회 위원 총원모집 공고

「진도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지역의 주요 과제를 주민이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풀뿌리 주민자치활성화 및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(추천) 모집합니다.

2026. 6. .

조도면



1. 모집기간 : 2026. 6. 19.(금) ~ 6. 30.(화) / 11일간
  2. 모집인원 : 4명
  3. 접수방법 : 조도면사무소 총무팀 방문접수(평일, 근무시간 09:00~18:00까지)
  4. 자격요건 :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필수 요건(사전교육이수)을 갖추고  
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필수 요건 :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(6시간) 이수자
      - ※ 경기도 평생학습포털([www.gseek.kr](http://www.gseek.kr))에서 경기도 주민자치회 온라인 기본교육(의무과정 6시간) 수료 또는 면 자체 운영하는 영상교육 수료
    - ①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    - ② 해당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 종사자(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사람)
    - ③ 해당 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, 기관, 단체의 임·직원
- ※ 「공직선거법」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
- ※ 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, 선거사무원,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, 회계책임자, 연설원, 대담·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음.

5. 임 기 : 2026. 7. 10. ~ 2027. 3. 5.(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)

\*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(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제17조)

## 6. 제출서류

- 신청서 또는 추천서 1부.
- 개인정보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 1부.
-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(6시간) 수료증 1부.

7. 선정결과 발표 : 개별 통보

## 8. 유의사항

- 가. 교육이수자를 선발함에 따라 사전교육 미이수자는 위원으로 위촉 될 수 없습니다.
- 나.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.
- 다. 주민자치회 위원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지며 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.

### <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>

-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임
- 주민자치회 기능
  -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
  -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처리
  - 주민총회, 자치(마을)계획 수립, 마을축제, 마을 신문·소식지 발간, 공동체 형성, 기타 각종 교육 활동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업무
-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
  -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.
  -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 하여서는 아니 됨.

9. 접수처 및 문의사항 : 조도면사무소 총무팀 (☎ 061-540-6804)

##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(추천)서

성 명		생년월일	
주 소		성 별	
전화번호		직 업	
주요경력			
추천사유 (신청사유)			
필수교육 수강여부 (6시간)	교 육 명 : 교육기간 :		

위 사람을 「진도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지산면 주민자치회 위원 후보자로 신청(추천)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신청(추천)인 (인)

붙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통.

추천인 (추천 경우)	성 명		연락처	
	직 장 (직업)		직 위	

조 도 면 장 귀하





# 자기소개서

성장배경	
지원동기/포부	
강점 및 약점	
경력사항/ 연구활동 등	